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관련 법규 4. 용어의 정의 5. 책임과 권한 6. 업무 절차 7. 기록 관리 8. 관련 문서				
0	2023.08.01	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안전환경관리부 주 임	안전환경관리부 부 장		대 표 이 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일자(년/월/일)	2023/08/01	2023/08/01		2023/08/01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6

1. 적용 범위

시공 및 공사관리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

이 지침서는 당사의 사업 활동상 발생하는 대기환경오염의 예방과 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계된 제반 업무절차 및 책임과 권한에 적용한다.

3. 관련 법규

- 3.1. 대기환경보전법
- 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4.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4. 용어의 정의

- 4.1.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2.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
- 4.3.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4. 가스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을 말한다.
- 4.5.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형 또는 액체형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 4.6.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3 / 6

4.7. 매연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4.8. 검댕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 μ m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4.9. 악취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로써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4.11.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4.12. 관할행정기관

대기환경 관련 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기관으로 당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1. 현장소장

- 1)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대상 검토 결과 승인
- 2)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업무 승인
- 3)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설치 및 운영
- 4) 대기환경 점검표 승인

5.2. 총무(총무 업무 담당자)

- 1)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계획
- 2)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서류 작성
- 3)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운영에 관한 업무
- 4) 현장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공사 및 설치
- 5) 현장 환경점검표의 실행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4 / 6

6. 업무절차

6.1. 일반사항

- 1) 현장소장은 현장에 적용해야 할 환경관리 대상과 범위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 (1)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적격 심사시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의 각 환경측면과 개선계획
 - (2) 현장 실착공 후 시행된 **환경운영관리 프로세스** 및 **규정**에 따른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 (3)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에 따른 환경법규등록부 작성
- 2) 현장소장은 식별된 환경관리 대상측면에 대해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1)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환경운영관리규정**" 및 고객사 환경관리계획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
 - (2)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목표관리규정**에 의한 환경 목표 추진계획 수립

6.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1) 총무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소장에게 검토를 의뢰하며, 검토 완료 후 승인한다.
- 2) 총무는 관할행정기관과의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소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 3) 총무는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방지시설의 공사 및 설치를 한다.

6.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 1) 현장 총무는 다음과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변경신고 포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관할행정기관, 환경부 등 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받았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4) 현장 총무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대기환경 보전 법규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현장 총무는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시설공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기준을 확인
 - (2) 방진벽, 방진막, 방지덮개 또는 기타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치, 기계 등의 설치 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색채나 재질의 사용 여부
 - (3) 방진막의 설치는 주풍향과 주변의 지형 형태에 따라 결정하며 재질은 나이론 계통의 개구율 40% 전후 재질의 사용 여부
 - (4) 현장 총무는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거 및 적절한 조치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5 / 6

취하여야 한다.

- 3) 현장 총무는 세륜시설, 살수시설 공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1) 차종 및 타이어 축의 개수와 관계없이 세륜이 가능한 시설의 선정
 - (2) 운반 및 이동 설치가 쉽고 단순한 구조의 선정
 - (3) 최소의 세륜수를 사용하며, 세륜수의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선정
 - (4) 소음 및 진동이 법적 이하 구조의 선정
- 4) 현장 총무는 다음과 같이 세륜, 살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진입도로 및 차량의 이동로 등에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 (2)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건설장비는 반드시 세륜시설을 거쳐 운행 시킨다.
 - (3) 세륜시설, 살수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5) 동절기 공사에 대비하여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보온시설하여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 6) 현장 총무는 고무, 가죽,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적합한 소각 시설에서 소각하며 노천 소각을 하여서는 안된다.
- 7) 현장 총무는 다음과 같이 소각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절한 시설의 제원을 선정 통보한다.
 - (2) 폐기물 재발생량은 3~5% 이내로 한다.
 - (3) 소각로 내부에 Air Nozzle을 부착하여 완전연소를 유도한다.
 - (4) 재(Ash)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6.4. 환경 점검

- 1) 현장소장은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총무)를 선정하여 환경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현장 관리자(총무)는 매일 1회 순회점검을 환경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별도 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사항 발견시 **지속적개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기록한다.
- 3) 발견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적개선 규정**에 따라 부적합을 처리하고 관련 조치란에 부적합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
- 4) 우기 혹은 특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점검을 상기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점검결과란 중 빈칸에 기록한다.

7. 기록관리

- 7.1.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HW-QESHP-751)에 따른다.

기록문서	관리부서	양식번호	보존기한
환경 점검표	안전환경관리부	HW-환경-003	3년

8. 관련문서

- 8.1. 환경운영관리 규정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6
		개정일자	2023.08.0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6 / 6

- 8.2.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
- 8.3. 환경영향평가 규정
- 8.4. 폐기물관리 지침서
- 8.5. 지속적개선 규정